

의안번호	2214144
의 퇴 인	최보운의원
회 답 일	2026.1.27.
추계번호	25C603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9,400만원, 2030년 2억 2,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0억 3,8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은 1개 기관에 의료기기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운영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금액으로, 실제 위탁 계획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의료기기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안 제24조의3)	194	200	207	215	222	1,038	2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의2 (의료기기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표시·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거나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제1항)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광고 3. 제26조제7항을 위반하는 표시·광고	재량규정
2	안 제24조의3 (의료기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24조의4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기술 연구·개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7항을 위반한 표시·광고와 관련된 유통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기술·방법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제3항)	재량규정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4조의2 (의료기기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등)	○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2	안 제24조의3 (의료기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3	안 제24조의4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기술 연구·개발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사사례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하므로, 향후 정해질 위탁 기관과 인력 및 업무량, 지원 범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의료기기 광고 등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인적 구성과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모니터링 사업 인력¹⁾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요원 4인을 두는 것으로 가정
-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의료기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 비용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하여 추계
 - 신규 채용에 따른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운영비는 발생하지 않거나 기관의 운영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함²⁾
-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및 기관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운영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를 고려하여 500만원으로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유사사례를 준용한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하고 인력 수를 곱하여 계산
 - (기본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 기준 모니터링 인력 기본급 2,851,000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
 - (수당) 2026년 기준 명절 휴가비 110만원(연), 급식비 14만원(월), 1인당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 628.3만원(연)을 준용한 1인당 기본급 대비 수당 비율을 산출하고,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6년 기준 1인당 평균 기본급 대비 수당 비율은 26.5%임

1) 사이버조사팀의 경우, 사무관 1인, 주무관 1인, 실무관(계약직) 2인 등 총 4인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모니터링 전담 요원은 1인임

2) 본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기존 조직의 사무공간, 장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기본경비와 자산취득비는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 (기관부담금)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의 합으로 하며,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관부담 요율은 11.44%에서 12.75%로 전망됨

[표 2] 인건비 항목별 단가 추계: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건비 단가	4,719	4,884	5,055	5,233	5,417	25,307	5,061
-기본급	3,421	3,533	3,649	3,767	3,890	18,260	3,652
-수당	906	936	967	998	1,031	4,837	967
-기관부담금	391	415	440	467	496	2,210	4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9,400만원, 2030년 2억 2,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0억 3,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189	195	202	209	217	1012	202
운영비	5.0	5.1	5.2	5.3	5.4	26.0	5.2
합계	194	200	207	215	222	1,038	2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